불법 외환거래 조사 관련 최근 동향 및 쟁점

1. 불법외환거래 등 관련 최근 동향

최근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재산은익,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조사 등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불법외환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정부는 관세청, 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하면서 기존의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 용역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하는 방식에서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 금감원에 공동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외화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금감원 외환감독국 산하에 '불법 외환거래 특별조사 TFT'를 만들어 의심가는 혐의거래 2,000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현재 세간에 문제가 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과 관련된 해외재산은익,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불법 외환거래 관련 주요 쟁점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문제

외국환거래법은 각종 외환거래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외환거래는 주로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데, 단순히 신고 제도를 몰랐던 경우도 있지만, 절세 등의 목적이나 소득원천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하여,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로서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 9-5조), 해외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며(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해외에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도 신고대상입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8조).

참고로 대법원은, 거주자인 A가 조세피난처에 B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A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C회사의 수출대금을 B가 홍콩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위 예금거래는 형식적으로 비거주자인 B와 비거주자인 홍콩의 은행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주자인 A 또는 C회사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본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특정금액[현재 5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내에 신고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일정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밖에 증권, 부동산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0조).

나. 조세법적 문제

조세법 관점에서는 해외에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나 불법 외환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그 실질이 한국 기업의 소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한국 개인의 소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통상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바(조세법처벌법 제3조),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를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거나 불법외환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외국환거래법과는 별도로 일정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형사법적 문제

불법 외환거래가 소위 비자금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를 통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외환거래이거나 불법외환거래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바로 횡령죄, 배임죄 또는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환거래 자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3. 외환거래 관련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소송 및 자문 실적

-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형사팀과 조세 및 관세팀이 협조하여 외환거래 관련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H사가 해외에 개설된 동사 계좌로 약 80억원을 송금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실적이 있고, 아울러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D사 대표이사가 D사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채무보증한 사안에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세종의 금감원 외환거래 자문팀은 해외법인 설립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에도 해외사무소로 신고한 사례, 역외금융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타인의 출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신고의무 위반한 사례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대출채권 매매거래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금감원 자문 단계에서 많은 실적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형사, 조세 및 관세, 외환거래 자문팀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으로 많은 실적을 거둔 바가 있으니 업무적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성 변호사 TEL. +82 2 316 4028 E-Mail. ysulee@shinkim.com
- 홍탁균 변호사 TEL. +82 2 316 4085 E-Mail. tkhong@shinkim.com
- 변영환 전문위원 TEL. +82 2 316 1675 E-Mail. yhbyeon@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